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617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서간 업무 이관에 따른 규칙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도심재생과 업무 일부를 주택과로 이관함에 따른 사무 조정
 -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관련
- 도심재생과 및 주택과 소관 분장사무 구체화
 -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관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3396-4512, FAX:3396-8603, 메일:agiwana@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6호, 9호, 10호부터 13호를 삭제하고 7호를 6호로, 8호를 7호로, 14호를 8호로 개정한다.

제18조 15호를 9호로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한다.

제18조 10호부터 12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10.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12.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제18조 16호를 13호로 하고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재산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비구역 내 재산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한다.

제18조 17호를 14호로 하고 “민영주택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택법에 따른 민영주택사업,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한다.

제18조 18호를 15호로 개정한다.

제19조 10호부터 1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1.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1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14.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및 희망지 사업에 관한 사항
15.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7.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도심재생과) 도심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5. (생략)</p> <p>6.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p> <p>7. (생략)</p> <p>8. (생략)</p> <p>9. ~ 13. (생략)</p> <p>14. (생략)</p> <p>15.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p> <p>10. <신설></p> <p>11. <신설></p> <p>12. <신설></p> <p>16.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재산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p> <p>17. 민영주택사업에 관한 사항</p> <p>18. (생략)</p> <p>제19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제18조(도심재생과) 도심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삭제></p> <p>6. (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p><삭제></p> <p>8. (현행과 같음)</p> <p>9.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p> <p>10.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p> <p>1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p> <p>12.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p> <p>13. 정비구역 내 재산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p> <p>14. 주택법에 따른 민영주택사업,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사항</p> <p>15. (현행과 같음)</p> <p>제19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현행	개정안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신설>	10.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1. <신설>	11.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12. <신설>	1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신설>	13.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14. <신설>	14.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및 희망지 사업에 관한 사항
15. <신설>	15.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신설>	16.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7. <신설>	17.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신설>	18.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